

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(제60조제2항관련)

| 항 목           | 세 목   | 합 격    | 약간 불량      | 불 량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핸들 조작         | 조 작 량 | 580도   | 480~580도   | 480도 미만  |
|               | 조 작 력 | 3.0kg  | 2.2~3.0kg  | 2.2kg 미만 |
|               | 지속시간  | 10초 이상 | 10초 미만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소요시간  | 5초 이내  | 5초 초과      |          |
| (발)브레이크 조작    | 압 력   | 20kg   | 15kg       | 15kg 미만  |
|               | 지속시간  | 10초 이상 | 10초 미만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반응시간  | 0.72초  | 0.72~0.84초 | 0.84초 초과 |
|               | 정 확 성 | 정확     | 부정확        |          |
|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  | 압 력   | 8kg    | 6kg        | 6kg 미만   |
|               | 지속시간  | 10초 이상 | 10초 미만     |          |
| 엑셀러레이터 조작     | 압 력   | 4kg    | 3kg        | 3kg 미만   |
|               | 지속시간  | 10초    | 10초 미만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정 확 성 | 정확     | 부정확        |          |
| 수동식 엑셀러레이터 조작 | 견 인 력 | 3.1kg  | 2.4kg      | 2.4kg 미만 |
|               | 지속시간  | 10초    | 10초 미만     |          |
| 사이드브레이크 작     | 견 인 력 | 12kg   | 9kg        | 9kg 미만   |
|               | 정 확 성 | 정확     | 부정확        |          |

(주)

1. 항목별로 약간 불량 시에는 3회까지 반복 평가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.
2. 위 표의 항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.
  - 가.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: 핸들 조작,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, 수동식 엑셀러레이터 조작, 사이드브레이크 조작
  - 나. 양쪽다리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리 엉덩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: (발)브레이크 조작, 엑셀러레이터 조작